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1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6년 5월 4일, 윤준병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6년 5월 6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8회 국회(임사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8.31.) 상정, 제안설명, 검토
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2026.9.16.) 상정, 축조심사, 의결
(수정가결)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9.17.)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윤준병 의원)

유류비가 운송원가의 30~40%를 차지하는 내항화물운송사업 특성상 국제정세 불안 등에 따른 유가 급등은 운송사업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실정임.

정부는 사업자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보조금 지급 한도가 유류에 부과된 유류세액으로 한정되어 있어 지급 한도에 도달하는 유가 이상으로 유가상승 시 실효성 있는 지원에 한계가 있음.

특히, 영세한 사업자는 유류비 상승분을 운송료에 적기 반영하기 어려워 운항 감축 또는 중단이 불가피함에 따라 주요 섬지역에 생필품 운송 중단으로 이어져 섬 주민 생활불편이 심화되고, 국가산업물자 운송도 제한되어 해상물류 공급망 마비가 우려되고 있음.

이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라 석유에 대해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발령하는 경우에는 유류세액을 초과하여서도 운송사업자의 유류 구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1조제2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윤성민)

개정안은 경유에 대한 유류세 보조금과 부탄에 대한 유류세 보조금으로 구분하여 명시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같이 유류세 보조금을 경유에 대한 유류세 보조금과 중유에 대한 유류세 보조금으로 구분하여 명시하고,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자원안보위기 정보가 발령된 경우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내항화물운송용 선박을 운항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유류의 구매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유사업계(화물자동차 운수업)와의 유류비 지원에 있어서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제정세 불안으로 인한 유류비 인상에 따른 연안화물선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로 보임.

개정안과 관련하여, 안 제41조제2항제1호의 ‘유류세 보조금’ 약칭을 삭제하고, 제1호와 제2호를 포괄할 수 있도록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유가보조금’으로 약칭하는 한편, 법 제41조제3항·제5항, 제41조의2, 제41조의3 등 연계 조문에서도 ‘유류세 보조금’을 ‘유가보조금’으로 일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4. 대체토론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선교)

“유류세 보조금”을 “유가보조금”으로 수정하고, 2026년 5월 29일 이후의 유류구매 비용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용례를 규정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의결함.

6. 찬반토론 요지

없 음

7. 수정안의 요지

개정안이 자원안보위기 경보 발령 시 유류 구매비용 보조를 신설하면서도 현행법상 “유류세 보조금”이라는 용어를 유지할 경우 신설되는 보조금이 지급절차·환수·지급정지 등 기존 관리규정의 적용대상에서 누락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세액 인상액 및 유류 구매비용에 대한 보조를 포괄할 수 있도록 “유류세 보조금”을 “유가보조금”으로 변경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의 형평성을 위해 2026년 5월 29일 이후 구매한 유류분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적용례를 신설함(안 제41조제2항 등).

8. 심사결과

수정가결

9. 부대의견

없음

10. 소수의견 요지

없음

11.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내용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

[붙임] 1.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6. 9.

제 안 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개정안이 자원안보위기 경보 발령 시 유류 구매비용 보조를 신설하면서도 현행법상 “유류세 보조금”이라는 용어를 유지할 경우 신설되는 보조금이 지급절차·환수·지급정지 등 기존 관리규정의 적용대상에서 누락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세액 인상액 및 유류 구매비용에 대한 보조를 포괄할 수 있도록 “유류세 보조금”을 “유가보조금”으로 변경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의 형평성을 위해 2026년 5월 29일 이후 구매한 유류분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적용례를 신설함(안 제41조제2항 등).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부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5조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석유가격구조개편에 따른 지원사업에 한정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를 “해양수산부는”으로, “일부”를 “일부(이하 “유가보조금”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세액 등”을 “세액”으로, “금액(이하 “유류세 보조금”이라 한다)”을 “금액”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 중 “유류세 보조금”을 각각 “유가보조금”으로 한다.

제41조의2제2항 중 “유류세 보조금”을 각각 “유가보조금”으로 한다.

제41조의3의 제목 중 “유류세 보조금”을 “유가보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의 “유류세 보조금”을 각각 “유가보조금”으로 한다.

안 부칙 본문을 삭제하고, 제1조 및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정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5월 29일 이후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내항화물운송용 선박을 운항하기 위하여 구매한 유류분부터 적용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41조(재정지원) ① (생략)	제41조(재정지원) ① (현행과 같음)	제41조(재정지원)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정부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 계법」 제5조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석유가격구조개 편에 따른 지원사업 에 한정한다)을 추진 하기 위하여 내항화 물운송사업자의 선박 에 사용하는 유류에 부과되는 세액의 인 상액에 상당하는 금 액의 전부 또는 일부 (이하 "유류세 보조금 "이라 한다)를 보조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 계법」 제5조에 따 른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석유가격 구조개편에 따른 지 원사업에 한정한다) 을 추진하기 위하여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	② <u>해양수산부는</u> ----- ----- ----- ----- ----- <u>일부</u> (이하 “유가보조금” 이라 한다)----- -----.
<신설>	1. 유류에 부과되는 다음 각 목의 세 액 등의 인상액 에 상당하는 금 액(이하 “유류세	1. ----- ----- <u>세</u> <u>액</u> ----- ----- <u>금액</u>

	<u>보조금”이라 한</u> <u>다)</u> <u>가. 「교육세법」</u> <u>제 5 조 제 1 항,</u> <u>「교 통 · 에 너</u> <u>지 · 환 경 세</u> <u>법」 제2조제1</u> <u>항제2호, 「지</u> <u>방세법」 제13</u> <u>6조제1항에 따</u> <u>라 경유에 각</u> <u>각 부과되는</u> <u>교육세, 교통 ·</u> <u>에 너 지 · 환 경</u> <u>세, 자동차세</u> <u>나. 「개별소비세</u> <u>법」 제1조제2</u> <u>항 제 4 호 라 목,</u> <u>「교 육 세 법」</u> <u>제 5 조 제 1 항 에</u> <u>따라 중유에</u> <u>각각 부과되는</u> <u>개별소비세, 교</u> <u>육세</u> <u>2. 「국가자원안보</u> <u>특별법」 제23조</u>	가.·나. (개정안과 같음) 2. (개정안과 같음)
--	---	--

<신 설>

의 사용 등) ① 제38조제1항 및 제41조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는 그 자금을 보조받거나 융자받은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제1항 및 제41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 받은 해운업자 및 해운단체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유류세 보조금을 받은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보조금, 융자금 및 유류세 보조금을 반환할 것을 명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

의 사용 등) (현행과 같음)

의 사용 등) ① (개정안과 같음)

② -----

유가보조금-----

유가보조금-----

세 체납처분의 예
에 따라 보조금, 융
자금 및 유류세 보
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41조의3(유류세 보
조금의 지급정지
등) ① 제41조제2항
에 따라 유류세 보
조금을 지급받는
내항화물운송사업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1.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
법」 제2조제9호
에 따른 석유판
매업자 또는
「항만운송사업
법」 제2조제4항
에 따른 선박연
료공급업의 등록
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석유판

제41조의3(유류세 보
조금의 지급정지
등) (현행과 같음)

-----유가보조
금-----
---.

제41조의3(유가보조
금의 지급정지 등)

① _____
 _____ 유가보조
 금 _____

1. _____

매업자등"이라
한다)로부터 「부
가가치세법」 제
32조에 따른 세
금계산서를 거짓
으로 발급받아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석유판매업자등
으로부터 석유의
구매를 가장하거
나 실제 구매금
액을 초과하여
「여신전문금융
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
드 등 유류세 보
조금의 신청에
사용되는 카드(이
하 "유류구매카
드"라 한다)에 의
한 거래를 하거
나 이를 대행하
게 하여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받

유가보조금

2.

유가보조
금

유가보
조금

은 경우	---
3. 실제로 운항한 거리 또는 연료 사용량보다 부풀 려서 <u>유류세 보 조금</u> 을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	3. ----- ----- ----- ----- <u>유가보조 금</u> ----- -----
4. 내항화물운송사 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하여 <u>유류세 보조금</u> 을 지급받는 행위	4. ----- ----- ----- ----- <u>유가보조금</u> ----- -----
5. 다른 사람 또는 업체가 구입한 연료 사용량을 자기가 사용한 것으로 위장하여 <u>유류세 보조금</u> 을 지급받는 행위	5. ----- ----- ----- ----- <u>유가보조금</u> ----- -----
6. 실제 주유받은 유종(油種)과는 다른 유종의 단 가를 적용하여 <u>유류세 보조금</u> 을 지급받는 행위	6. ----- ----- ----- ----- <u>유가보조금</u> ----- -----

7. 유류세 보조금

의 청구와 관련
된 관계 서류에
대한 보완 또는
현장 확인을 요
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

8. (생략)

② 해양수산부장관
은 내항화물운송사
업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지행
위를 한 경우 등록
취소, 해당 선박의
감선 조치 또는 6
개월 이내의 기간
을 정하여 해당 선
박의 운항정지를
명하거나 1년 이내
의 기간을 정하여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 ④ (생략)

7. 유가보조금-----

8. (현행과 같음)

② -----

유가보조금-----

-----.

③ · ④ (현행과 같음)

	부칙 <u>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u>	부칙 <u>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u> <u>제2조(재정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1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5월 29일 이후 내항화물 운송사업자가 내항 화물운송용 선박을 운항하기 위하여 구매한 유류분부터 적용한다.</u>
--	--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 중 “정부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5조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석유가격구조개편에 따른 지원사업에 한정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선박에 사용하는 유류에 부과되는 세액의 인상액에 상당하는”을 “해양수산부장관은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유류세 보조금”을 “유가보조금”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 중 “유류세 보조금”을 각각 “유가보조금”으로 한다.

1. 유류에 부과되는 다음 각 목의 세액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교육세법」 제5조제1항,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2호, 「지방세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경우에 각각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자동차세
나.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라목, 「교육세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중유에 각각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2.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내항화물운송용 선박을 운항하

기 위하여 구매하는 유류의 구매 비용

제41조의2제2항 중 “유류세 보조금”을 각각 “유가보조금”으로 한다.

제41조의3의 제목 중 “유류세 보조금”을 “유가보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의 “유류세 보조금”을 각각 “유가보조금”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정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5월 29일 이후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내항화물운송용 선박을 운항하기 위하여 구매한 유류분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1조(재정지원) ① (생 략)	제41조(재정지원) ① (현행과 같 음)
② 정부는 「에너지 및 자원사 업 특별회계법」 제5조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석 유가격구조개편에 따른 지원사 업에 한정한다)을 추진하기 위 하여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선 박에 사용하는 유류에 부과되 는 세액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 <u>유류세 보조금</u> ”이라 한다)를 보조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내항화물 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u>유가보</u> <u>조금</u> ----- -----.
<신 설>	1. 유류에 부과되는 다음 각 목 의 세액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u>금액</u> 가. 「교육세법」 제5조제1 항, 「교통·에너지·환경 세법」 제2조제1항제2호, 「지방세법」 제136조제1 항에 따라 경유에 각각 부 과되는 교육세, 교통·에너 지·환경세, 자동차세

<신 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유류세 보조금의 지급에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생략)
- ⑤ 유류세 보조금의 지급절차
- 증빙자료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제41조의2(보조금 등의 사용 등)
- ① (생략)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제1항

- 나.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제4호라목, 「교육세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중유에 각각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2.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내항화물운송용 선박을 운항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유류의 구매 비용
- ③ -----유가보조금-----

-----.
- ④ (현행과 같음)
- ⑤ 유가보조금-----

-----.
- 제41조의2(보조금 등의 사용 등)
- ① (현행과 같음)
- ② -----

및 제41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 또는 용자금 받은 해운업자 및 해운단체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유류세 보조금을 받은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보조금, 용자금 및 유류세 보조금을 반환할 것을 명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보조금, 용자금 및 유류세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41조의3(유류세 보조금의 지급 정지 등) ① 제41조제2항에 따라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받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자 또는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선박연료공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석유판매업자등”이라 한다)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유가보조금-----

-----유가보조금-----

-----유가보조금-----
-----.

제41조의3(유가보조금의 지급 정지 등) ① -----
-----유가보조금-----

-----.

1. -----

발급받아 <u>유류세 보조금</u> 을 지급받은 경우	~~-----유가보조금-----~~ --
2. 석유판매업자등으로부터 석유의 구매를 가장하거나 실제 구매금액을 초과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 <u>유류세 보조금</u> 의 신청에 사용되는 카드(이하 “유류구매카드”라 한다)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여 <u>유류세 보조금</u> 을 지급받은 경우	2. ----- ----- ----- ----- ----- ~~-----유가보조금-----~~ ----- ----- ----- <u>유가보조금</u> -----
3. 실제로 운항한 거리 또는 연료 사용량보다 부풀려서 <u>유류세 보조금</u> 을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	3. ----- ----- <u>유가보조금</u> ----- --
4. 내항화물운송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하여 <u>유류세 보조금</u> 을 지급받는 행위	4. ----- ----- ~~-----유가보조금-----~~ ---
5. 다른 사람 또는 업체가 구입한 연료 사용량을 자기가 사용한 것으로 위장하여 <u>유류세 보조금</u> 을 지급받는 행위	5. ----- ----- ----- <u>유가보조금</u> -----
6. 실제 주유받은 유종(油種)과	6. -----

는 다른 유종의 단가를 적용하여 <u>유류세 보조금</u>을 지급받는 행위	----- ----<u>유가보조금</u>----- -
7. <u>유류세 보조금</u>의 청구와 관련된 관계 서류에 대한 보완 또는 현장 확인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	7. <u>유가보조금</u>----- ----- ----- -----
8. (생략)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내항화물 운송사업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등록 취소, 해당 선박의 감선 조치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선박의 운항정지를 명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u>유류세 보조금</u>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 ④ (생략)	8. (현행과 같음) ② ----- ----- ----- ----- ----- ----- ----- -----<u>유가보조금</u>----- -----. ③ · ④ (현행과 같음)